

LINC+ 사업단 운영 규정

제정 2017. 6. 30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(LINC+)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경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.) LINC+ 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 이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사업단은 제1조의 설치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 도입
2.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및 활용
3.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
4. 기업신속대응센터(URI) 설치 및 운영
5.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산학협력 활동 지원
6. 대학의 강점과 지역사회,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, 기술(또는 지식)개발 등의 종합지원
7. 기타 LINC+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및 프로그램 등

제3조(사업기간 및 사업연도) ① 사업기간은 5년(2017년~2021년)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5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하되, 개별 사업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사업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4조(사업단 조직구성) ① 사업단은 총장 직속 기구로 둔다.

② 사업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장을 두고, 실무부서 및 사업 분야별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사업단과 연계하여 대학내 기업지원서비스의 총괄 관리를 위하여 기업신속대응센터(URI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5조(사업단장) ① 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망, 공직임명, 퇴직 및 그 밖에 사유로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체할 수 있다.

②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사업계획의 수립
2.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
3. 사업실적 보고
4. 사업비의 집행
5. 그 밖의 사업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

제6조(위원회 등) 사업단은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, 실무위원회를 두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에 따른다.

제3장 재정

제7조(재정 및 회계) ① 사업단의 사업비는 국고지원금, 대응부담금 및 기타로 충당한다.

② 사업비 관리와 회계는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(LINC+) 운영 규정 및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.

제8조(기타)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LINC+사업 운영에 관한 관계법령 및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전에 사업단에서 결정되어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